

22.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 2022년 9월 2일
- 발 의 자 : 김정옥 의원, 류종우 의원, 박소영 의원, 박종필 의원, 육정미 의원, 윤영애 의원, 이영애 의원, 이재화 의원, 정일균 의원, 하병문 의원, 허시영 의원, 황순자 의원
- 회부일자 : 2022년 9월 6일
- 상정일자 : 제295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22년 9월 21일) 원안 가결

##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김정옥 의원)

### □ 제안이유

-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이 아기를 적게 낳는 것’을 의미하는 ‘저출산’이라는 용어가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많음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적음’을 뜻하며 아이의 탄생 자체에 의미를 두는 ‘저출생’이라는 용어로 개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으로 변경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17조)
-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을 ‘출생축하금’, ‘출생장려금’으로 변경  
(안 제9조)
- ‘저출산 대응 관련사업 지원’이라는 용어를 ‘저출생 대응 관련사업 지원’으로 변경(안 제16조)

## 3.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이규홍)

### □ 주요 검토사항

- 안 제4조, 제5조, 제17조의 ‘저출산’ 용어를 ‘저출생’으로 개정 하였고
- 안 제9조제1항제1호의 ‘출산축하금’을 ‘출생축하금’으로 개정하였으며, 같은 항 제2호 중 ‘출산장려금’을 ‘출생장려금’으로 개정하였음.
- 안 제10조의2제2항의 ‘출산’ 용어를 ‘출생’으로 개정하였고,
- 안 제16조의 제목을 ‘저출산 대응 관련사업 지원’에서 ‘저출생 대응 관련사업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개정하였음.

### □ 검토결과

- 전국의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는 2015년 이후 해마다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2021년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2015년 합계출산율과 비교했을 때 30% 이상 떨어지는 등 출생아 수 감소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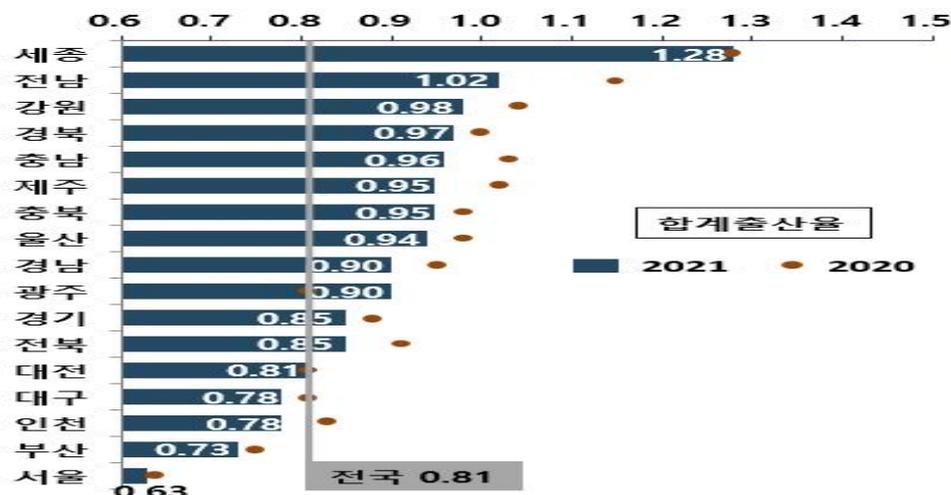
[전국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 현황]



[출처 : 통계청]

- 특히 대구시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전국 17개 광역자치체 중 14위에 그치고 있어 대구시의 저출생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시도별 합계출산율 현황]



[출처 : 통계청]

- 그러나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저출산’이라는 용어가 ‘여성이 아이를 적게 낳음’이라는 뜻으로, 인구 감소 문제를 여성만의 책임으로 인식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성 차별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저출산’ 용어를 ‘저출생’으로 개정함으로써 출생을 감소에 따른 인구문제는 여성이 아닌 모두가 해결해야 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에 취지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저출산’이라는 용어가 오랜기간 동안 법령이나 정책 등에 공식화되어 사용해 온 만큼, 이번 개정 후 ‘저출산’과 ‘저출생’ 용어가 혼재되어 정책 추진 시 혼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어 사용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음.
- 또한 대구시에서도 이번 개정이 단순 용어 개정에만 그치지 않고 출생아 수 감소 문제가 사회전체의 종합적인 문제로 인식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겠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조례 제명의 ‘출산’ 부분을 ‘출생’ 으로 개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람.	상위법령 또한 ‘저출생’ 으로 용어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나, 아직 개정되지 못함에 따라 제명을 제외하고 개정가능한 부분에 대해 선제적으로 개정하였음.

## 5.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 요지

-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전원찬성)

##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